

# 환경부고시 제2001-98호

##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중 개정

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고시 (환경고시부 제2001-81호)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2001년 8월  
환경부장관

[별표1] 연료의 황함유기준(제5조 관련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 분		황함유기준별 시행시기		
		'97.6.30까지	'97.7.1부터 2001.6.30까지	2001.7 이후부터
유	중유 (벙커-A, 벙커-B, 벙커-C)	1.0% 이하	0.5% 이하 1.0% 이하	0.3% 이하 0.5% 이하 1.0% 이하
	경유 등유1호(보일러등유)		0.1% 이하	
류	저황왁스유 (LSWR)		0.3% 이하	
	부생 연료유	1호(등유형)	-	0.1% 이하
		2호(중유형)	-	
석 탄	유연탄	0.7% 이하	0.5% 이하	0.3% 이하
	무연탄	0.7% 이하	0.5% 이하	0.5% 이하

비고 : 1.유류 및 석탄의 황함유기준은 제6조 및 제11 조에 규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, 대기환경 보전법시행 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 체연료사용 승인을 얻은 시설중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경우에도 위 표중 중유의 기준을 적용한다.



[별표2]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(제6조제1항 관련)의 가. 경유(황함유 기준 0.1%이하)와 나. 중유중 (3) 0.3% 이하 중유( LSWR 포함) 공급 · 사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경유(황함유기준 0.1% 이하)

시·도	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		
	고시 시행일부터 '97. 6. 30까지	'97.7.1이후	
특별(광역시)	서울·인천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	전 국	
도	경기		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의왕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의정부·남양주·하남·고양·오산·이천·용인시, 광주·김포·화성군
	강원		춘천·원주·강릉·동해·삼척시
	충북		청주·충주·제천시
	충남		아산·서산시, 당진군
	전북		전주·군산·익산시
	전남		여천·광양·여수·목포·나주시, 여천군
	경북		포항·구미·경주·경산·김천시
	경남		울산·김해·창원·마산·진주·진해·양산시
제주	전지역		

비고 : 경유 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등유1호(보일러 등유), 부생연료유1호(등유형)나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.

나.중유

(3) 0.3% 이하 중유( LSWR 포함)공급 · 사용지역

시·도	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			
	2001. 7. 1부터	2002. 7. 1부터	2003. 7. 1부터	
특별(광역시)	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울산	광주·대전	-	
도	경기	수원·안산시	군포·오산시	
	강원	-	강릉시	
	충북	-	청주시	제천시
	충남	-	-	서산시
	전북	-	전주·군산시	-
	전남	-	여수시(구 여천시), 광양시	여수시(구 여수시)
	경북	-	구미시	-
	경남	-	창원·마산시	김해시

비고 : 1.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.

2. 0.3% 이하 중유 ( LSWR 포함) 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부생연료유 2호(중유형)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하 자료는 종전에 고시한 내용으로 금번 고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취·제재한 것임. 편집자주

나. 증유

(1) 1.0%이하 증유 공급·사용지역

시·도	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			
	기시행지역	'96. 7.1 부터	'97. 7. 1부터	'99. 1. 1부터
특별(광역시)	서울·인천·부산·대구	광주·대전	-	전 국  (0.5%이하 증유공급·사용지역은 제외)
도	경기	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의왕·의정부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남양주·하남·고양시, 광주·김포군	이천·용인시, 화성군	
	강원	-	춘천·원주시	
	충북	-	청주·충주·제천시	
	충남	-	-	
	전북	-	전주·군산·익산시	
	전남	-	여천·광양시, 여천군	
	경북	-	포항·구미시	
	경남	-	울산·김해·창원·마산·진해·양산시	
제주	-	-	전지역	

비고 :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한다.

(2) 0.5%이하 증유(LSWR 포함) 공급·사용지역

시·도	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			
	'97. 7. 1부터	'98. 7.1 부터	'99. 7. 1부터	2001. 7. 1부터
특별(광역시)	서울·인천·대구	부산	대전·광주	
도	경기	수원·부천·과천·성남·광명·안양·의왕·의정부·안산·군포·시흥·구리·하남·고양·남양주시, 광주·김포군	-	오산·이천·용인시, 화성군
	강원	-	원주시	춘천·강릉·동해·삼척시
	충북	-	청주시	충주·제천시
	충남	-	-	서산·아산·천안시
	전북	-	-	전주·익산·군산시
	전남	여수시(구여천시, 구 여천군)	-	나주시
	경북	경산시	여수(구여수시)·광양시	구미·김천·경주·포항시
	경남	울산시	-	창원·마산·진해·진주·김해·양산시
	제주	-	-	전지역

비고 :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한다.